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20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백혜련・김준혁・전진숙
강준현・홍기원・이강일
백승아・염태영・이수진
김 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그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헌법이 독립기관으로 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투표 당일,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고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상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분되었음. 뿐만 아니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비율을 50%로 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는데 이 역시 날치기 결정이었다고 지적함. 선거 당일 투표 용지 부족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직원들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혀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78조의2 신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0항 신설). 투표관리관들에 대해서도 투표일에 발생하는 혼잡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선거운영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매 선거마다 선거일 전 60일까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 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 지연, 장비 장애, 인파 밀집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투표소별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 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8조의2(선거사무 사후 평가 및 보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선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선거운영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매 선거마다 선거일 전 60일까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 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 ④ (생 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 지연, 장비 장애, 인파 밀집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⑨ (생 략)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투표소별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 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8조의2(선거사무 사후 평가 및 보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선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